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고시 개정 안내(2014-79, 80호)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-79, 80호(2014.5.30.)

2.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·3항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75호, 2014.5.26.)」 이 불임과 같이 개정·고시 되어 안내합니다.

※ 시행일 : 2014년 6월 1일

붙 임 : 1.2014-79호 고시문 및 개정내역

2. 2014-80호 고시문 및 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 kha.or.kr) / 협회 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차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281 ( 2014.05.30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ysy@kha.or.kr